

추석선물도 김영란법 걸릴까?

친지·이웃간 금액제한 없어... 이해관계 없을 시 공직자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기준으로 한 추석 선물 범위를 안내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한 것이므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끼리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

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머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 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선물할 수 있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지만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원이 넘더라도 100만원 이하 선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가족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도 가능하다.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

직자외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집행 청구인 등

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 측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주고받아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면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뉴스1

큰징거미새우 내수면 양식 부각

고부가품종·성장가능성 높아어업인 관심 집중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원주군 고산면 소재)에서는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부가가치 내수면 양식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큰징거미새우 맞춤형 현장교육을 지난 24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이미 실시한 2회(2.7, 5.18) 교육에 이어 세번째 실시하는 교육으로 참여자 등 어업인들에 대한 폭넓은 양식기술을 보급하고자 그간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시험연구(2016-2017년)하여 확보한 큰징거미새우 어미 관리에서 채란, 부화 등 종자 생산까지 노하우가 담긴 일체의 양식기술과 안정적인 종자생산 및 단가 절감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큰징거미새우는 담수역인 연못, 운하, 강하구에 서식하는 새우로 육질

이 좋다고 식감이 뛰어나 주로 고급식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6~9개월만에 최대 300~400g까지 성장가능하고 1kg당 4~6만원을 호가하는 고부가 품종으로 최근 내수면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는 2년간(2016~2017)에 거친 큰징거미새우 종묘생산시험연구를 통하여 16년도에 18만 5천마리의 어린 큰징거미새우 종묘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최원영 소장은 "우리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큰징거미새우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시험연구를 실시하여 누구나 쉽게 큰징거미새우 양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거수 경례하는 신임 부사관들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가 지난 25일 교육시령관 주관으로 17-2기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부사관학교 제공>

오늘부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 단속

전북도는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공고한 방역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 시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에 대한 무선신식장치(GPS) 장착,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3개월간(2017. 4~6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과 전원정보가 없는 차량이며 아울러 축산차량 밀집시설(기축시장, 도축장 등) 출입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전북도 축산차량등록 5,471대 중 930대(3개월간 정보 미수집

차량 846대, 전원정보가 없는 차량 84대(17%)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GPS 단말기 정상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을 통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구형 GPS 단말기를 사용하는 축산차량소유자는 이동 정보 수집 및 축산관계시설 반경오차 범위 축소 등의 기능이 보완된 신규 GPS단말기로 시군에 교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요인 없앤다

전북도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한다.

지난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학교 인근 교통과 유해환경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교육청·전북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도내 4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과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교통법규 위반·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점검한다.

전북도는 유해환경과 관련해서는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불건전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되며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보행자의

전북도, 내달 22일까지 단속 스킨본 불법 주정차 등 집중

동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도 벌인다.

이현웅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며 "학교 주변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플라즈마 기술·응용 한-중 연구교류 워크숍

국기해양연구소(이하 해양합(연), 소장 김기만)는 중국 대련 이공대학 플라즈마 그룹과 연구교류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플라즈마 기술의 연구방향과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한 연구교류 워크숍으로 한국과 중국이 격년제로 개최한다.

본 워크숍은 한국을 대표하여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 플라즈마기술 전문연구기관인 플라즈마 기반기술, 원천기술 및 융복합 응용기술을 선도하는 플라즈마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에서 주관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플라즈마 연구를 진행 중인 국내·외 연구자들의 초청강연(30건), Plenary Talk(1건)이 진행됐으며 관련 분야 연구자 약 70여명이 참가했다. /군산=장현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7-1122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변경(㎡)	변경률(%)	비고
합계	13,910	-	13,910	100.0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간13,910	-	-
지역	계획관리지역	-	13,910	100.0

나.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유지율(%)	결정(변경)사유
-	이서면 상계리 581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13,910	100(%)	이서면 인구 증가로 이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위해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변경

다.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종결정일	비고
신설	-	체육시설	이차목적체육관	완주군 이서면 상계리 581번지 일원	(중) 13,005	"금회"	

라.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체육시설	• 위치: 이서면 상계리 581번지 일원 • 시설의 종류: 이차목적체육관 • 면적: 13,005㎡	• 인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주민과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제공하고자 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마.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면적(㎡)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38 6	국지포도	89	소로1-72 이서면 상계리 580-24도	이서면 상계리 547-49	일반도로	-	완주군고시 제2012-86호 (12.07.20)	
변경	소로	2 00 8	국지포도	89	소로1-72 이서면 상계리 580-24도	이서면 상계리 547-49	일반도로	-	-	

바.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138호선	소로2-00호선	도로폭 변경 (도로폭 6m→도로폭 8m)	상위중 간(도포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폭 변경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실용생략"
3.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실용생략"
4. 열람(의견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20일간(국공휴일 제외)
5. 열람(의견제출)장소 가. 열람장소: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및 공영개발과 나. 의견제출기간: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6.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7) 및 공영개발과(☎063-290-2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8일 완 주 군 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